



의정활동보고서



제212회 임시회(2007. 1. 30 ~ 2. 9)

경 상 북 도 의 회

개 원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조병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2007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도 첫 의정을 여는 제212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월 8일에 열린 신년교례회에 이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만복이 찾아온다는 정해년(丁亥年) 을 한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도민의 기대와 여망을 담아 새로운 응도 경북의 발판을 마련 하였다고 봅니다.

을 한해는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현실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찬 기대로 시작하는 2007년은 그 어느 해보다 많은 변화와

도전이 예상됩니다.

올해는 국내경제가 호전되어 청년실업난이 해소되고 정치가 안정 되길 바라면서 우리 도정에도 여러 분야에 걸쳐서 눈부신 성장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 「한·미 FTA 협상」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 및 「빈부 격차의 해소」,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비롯하여 나라 안팎으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중심을 잡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나라의 새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가 갈등과 분열의 증폭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어울려 신명을 펼치는 축제의 장이 되고, 나라와 겨레의 미래를 밝게 설계 하는 희망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청이전 조례안」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조례안을 비롯하여 금년도 도정에 관한 업무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시책에 대해서 꼼꼼히 따지고 살피는 것은 물론,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도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한층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겠습니다.

아울러 동료의원님께서서는 업무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금년 의정활동의 기초로 삼아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풍요롭고 살기 좋은 경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도 3백만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새로운 희망의 밝은 빛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정과 온 누리를 밝게 비추어 활기가 넘치는 세상이 이루어지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월 30일

경상북도 의회의장 **李相千**

차 례

I. 개 황	9
II. 의사일정	10
1. 소 집	10
2. 회 기	10
3. 활 동	11
가. 본회의	11
나. 위원회	12
III. 의안 처리	16
1. 본회의	16
2. 위원회	17
IV. 민원 처리	19
1. 청 원	19
2. 진 정	19
가. 접 수	19
나. 처 리	20

V. 본회의 보고사항	21
1. 의안 접수사항.....	21
2. 조례 공포사항.....	21
3. 상임위원회 부결사항	23
4. 위원회 활동사항.....	23
5. 기타 의정활동사항.....	24
VI. 5분 자유발언	30

부 록

□ 조례안	45
1.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2.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3.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9
4.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6
5.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안	98
□ 결의안	110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1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12회 임시회는 2007년 1월 30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2월 9일까지 11일간의 회기동안 2차의 본회의와 연24회의 상임 및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1월 30일(화)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자유발언(한혜련 의원), 제21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보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처리하고 산회하였다.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였다.

2월 9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김영기·이시하 의원)을 청취 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의결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 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안과 한혜련, 김수용 의원의 14인이 발의한 수정안을 동시에 상정하여 의결한 후 폐회하였다.

II.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다. 집회공고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07-4호 (2007년 1월 17일)

라. 집회일시 : 2007년 1월 30일(화) 11: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07년 1월 30일 ~ 2월 9일(11일간)

나. 개의회수

○ 본회의 : 2회(누계 17회)

○ 위원회

구 분	계	의 회 운 영	기 획 경 제	행 정 보 건 복 지	교 육 환 경	농 수 산	통 상 문 화	건 설 소 방	예 결 특 위
211회 까지	126	8	18	20	18	16	15	16	15
212회	24	2	3	2	4	3	4	5	1
누 계	150	10	21	22	22	19	19	21	16

※ 누계는 제8대 의회 누계

3. 활 동

가. 본회의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7. 1. 30(화) 11:00 (제1차)	1. 제21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보고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2007. 2. 9(금) 11:00 (제2차)	1.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5.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보고 9.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7. 2. 2(금) 13:00 (제1차)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 의회사무처소관 2. 제213회 임시회 회기협의를 건	원안가결
2007. 2. 9(금) 10:00 (제2차)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원안가결

〈기획경제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7. 1. 24(수) 11:00 211회 폐회중 (제6차)	1. 경상북도청 이전을 위한 조례안 2.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안	수정가결 부 결
2007. 1. 31(수) 11:00 (제1차)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 기획조정본부, 새경북기획단	
2007. 2. 1(목) 11:00 (제2차)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 경제과학진흥본부,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7. 2. 5(월) 11:00 (제1차)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 경도대학, 행정지원국 소관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7. 2. 6(화) 11:00 (제2차)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 감사관실, 자연환경연수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교육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7. 1.31(수) 11:00 (제1차)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 교육청 소관	
2007. 2. 1(목) 11:00 (제2차)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 환경해양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 2. 5(월) 2. 6(화) (2일)	1. 현지확인(경주,울진,영덕,포항) ○ 산림환경연구소 및 왕경숲 조성현장 ○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 영덕 삼사 어촌민속박물관 ○ 사방 100주년 기념사업장 ○ 과학교육원 및 과학고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7. 1.30(화) 11:00 (제1차)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	
2007. 2. 5(월) } 2. 6(화) (2일)	1. 현지확인 ○ 경북한우클러스터 사업장(경산) ○ 풍기인삼시험장(영주)	

〈통상문화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7. 1. 31(수) 10:30 (제1차)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 투자통상본부 소관 2.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7. 2. 6(화) } 2. 8(목) (3일)	1. 현지확인(구미, 포항) ○ 구미 : ZF렘페더샤시(주), 도레이새한(주) 아사히글라스, LG전자 구미사업장 (주)영도벨벳 ○ 포항 : 철강산업단지, (주)제일테크노스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7. 1. 31(수) 11:00 (제1차)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2.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3.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가결 원안가결
2007. 2. 1(목) 11:00 (제2차)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소방본부 소관	
2007. 2. 5(월) } 2007. 2. 7(수) (3일)	1. 현지확인 ○ 포항 남부소방서 ○ 포항 구룡포 ~ 대보간 지방도사업 ○ 경주 천북산업단지조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7. 2. 9(금) 11:50 (제1차)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견 위원장 : 송필각 간 사 : 윤영식	

Ⅲ. 의안 처리

1. 본회의

구 분	부 의	심의·의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계	8 (65)	8 (65)	5 (47)	3 (18)				
조 례 안	소 계	7 (41)	7 (41)	4 (29)	3 (12)			
	의회제안	3 (9)	3 (9)	1 (6)	2 (3)			
	도지사제출	4 (21)	4 (21)	3 (16)	1 (5)			
	교육감제출	(11)	(11)	(7)	(4)			
예산·결산	(8)	(8)	(2)	(6)				
동의·승인	(6)	(6)	(6)					
건의안	(2)	(2)	(2)					
결의안	1 (4)	1 (4)	1 (4)					
기타안	(3)	(3)	(3)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2. 위원회

구분 위원회	회부	심 의 · 의 결							부 결	철 회	계 류
		가 결									
		계	조례	예산 결산	동의 승인	건의	결의	기타			
계	7 (69)	8 (65)	7 (41)	(8)	(6)	(2)	1 (5)	(3)	1 (3)		1 (1)
의회 운영	2 (9)	1 (8)	(3)		(1)		1 (3)	(1)			1 (1)
기획 경제	(11)	1 (10)	1 (9)		(1)				1 (1)		
행정 보건복지	2 (11)	2 (11)	2 (9)		2 (2)						
교육 환경	(16)	(15)	(13)		(2)				(1)		
농수산	(2)	(2)	(1)			(1)					
통상 문화	1 (5)	1 (4)	1 (1)			(1)	(2)		(1)		
건설 소방	1 (4)	2 (4)	2 (4)								
특별	(8)	(8)		(8)							
본회의	1 (3)	1 (3)	1 (1)					(2)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

〈상임위 부결(본회의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 3건〉

- ①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 8. 4 교육감제안, '06. 12. 18 교육환경위원회 부결)
- ②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06. 11. 8 도지사제안, '06. 11. 29 경제통상위원회 부결)
- ③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안
('06. 12. 8 도지사제안, '07. 1. 24 기획경제위원회 부결)

〈상임위 계류 중인 안건 : 1건〉

- ① 코오롱정리해고자 농성장 강제철거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숙향 의원외 13명 제안)

IV. 민원 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 누계는 제8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구분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문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 어업	기 타
계	3 (13)	1 (1)	(1)	2 (3)	(2)	(1)		(3)	(2)	
의 회 운 영										
기 획 경제학	2 (2)			2 (2)						
행 정 보건복지	1 (2)	1 (1)	(1)							
교 육 환 경	(3)					(1)		(2)		
농수산	(2)								(2)	
통 상 문 화	(2)			(1)				(1)		
건 설 소 방	(2)				(2)					
특별 위원회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

나. 처 리

구분 위원회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3 (13)	3 (13)				
의회운영						
기획경제	2 (2)	2 (2)				
행 정 보건복지	1 (2)	1 (2)				
교육환경	(3)	(3)				
농 수 산	(2)	(2)				
통상문화	(2)	(2)				
건설소방	(2)	(2)				
특별위원회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김숙향 의원외 13 (2006. 12. 26)	구미시장의 공무원을 동원한 코오롱 정리해고자 농성장 강제철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 (2007. 1. 2)
경상북도지사 (2007. 1. 19)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07. 1. 22)
경상북도지사 (2007. 1. 19)	경상북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07. 1. 22)
경상북도지사 (2007. 1. 19)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상문화 (2007. 1. 22)
장두욱 의원외 12 (2007. 1. 24)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 (2007. 1. 25)

2. 조례 공포사항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6. 12. 15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2006. 12. 28 (제2948호)
2006. 12. 15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006. 12. 28 (제2949호)
2006. 12. 15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6. 12. 28 (제2950호)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6. 12. 15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2006. 12. 28 (제2951호)
2006. 12. 15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2006. 12. 28 (제2952호)
2006. 12. 15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06. 12. 28 (제2953호)
2006. 12. 15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2006. 12. 28 (제2954호)
2006. 12. 15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2006. 12. 28 (제2955호)
2006. 12. 15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2006. 12. 28 (제2956호)
2006. 12. 15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2006. 12. 28 (제2957호)
2006. 12. 15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6. 12. 28 (제2958호)
2006. 12. 15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2006. 12. 28 (제2959호)
2006. 12. 15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	2006. 12. 28 (제2960호)
2006. 12. 15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2006. 12. 28 (제2961호)
2006. 12. 22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대구경북연구원 육성조례	2007. 1. 15 (제2962호)
2006. 12. 22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	2007. 1. 15 (제2963호)

3. 상임위원회 부결사항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경상북도교육감 (2006. 8. 7)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환경 (2006. 12. 18)
경상북도지사 (2006. 11. 8)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상문화 (2006. 11. 29)

※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심사 결정

4. 위원회 활동사항

위원회	일시(기간)	장 소	활 동 내 용
의회운영 위원회	2007. 1. 24 ~ 1. 26	제주도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현황 및 운영상황 등에 대한 청취 및 간담회 •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천문과학문화회관 견학 등
기획경제 위원회	2006. 12. 22 2007. 1.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청이전 조례안 의견조사 - 대 상 : 도의원 55명 - 내 용 : 2건의 도청이전 조례안에 대한 비교선택 및 의견수렴
기획경제 위원회	2007. 1. 11 ~ 1. 12	충남도의회 및 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청이전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체계 및 결정과정 자료수집
기획경제 위원회	2007. 1. 15 ~ 1. 22	위원회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청이전 조례안에 대한 축소심사 • 축소심사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의견수렴(도의원 55명)
기획경제 위원회	2007. 1. 24 14:00	위원회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11회 정례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개최 - 경북도청 이전 조례안 심사
기획경제 위원회	2007. 1. 16 16:00	위원회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경북 경제통합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설명회 (홍철 대경연구원장, 서정해 대구경북경제통합연구단장)

위원회	일시(기간)	장 소	활 동 내 용
행정보건 복지위원회	2007. 1. 18 14:00 2007. 1. 29 14:00	포항여성문화회관 교육문화복지회관	• 보육조례제정 관련 권역별 간담회
농 수 산 위 원 회	2007. 1. 16 }\ 1. 17	수산자원개발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	• 각종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실태 확인
통상문화 위 원 회	2006. 12. 25 }\ 12. 28	몽골 (투브아이막)	•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의정교류회 - 상호 의정교류를 통한 우호증진 및 공동발전방안 논의

5. 기타 의정활동사항

- 경상북도의정회 주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발전방안” 토론회
 - 일 시 : 2006. 12. 26(화) 13:30
 - 장 소 : 도 교육연구원
 - 참 석 : 안순덕 부의장

- 2006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시상식
 - 일 시 : 2006. 12. 27(수) 14:00
 - 장 소 : 도청 강당
 - 참 석 : 이상천 의장

- 2007 경북방문의 해 선포식 및 한민족 해맞이 행사
 - 일 시 : 2007. 1. 1(월) 06:30
 - 장 소 : 포항 호미곶
 - 참 석 : 이상천 의장

- 2007 매일신문사 주최 대구·경북 신년교례회
 - 일 시 : 2007. 1. 2(화) 12:00
 - 장 소 : 인터불고호텔
 - 참 석 : 이상천 의장, 도의원

- 2007 여성단체 신년교례회
 - 일 시 : 2007. 1. 5(금) 11:00
 - 장 소 : 경주 현대호텔
 - 참 석 : 이상천 의장

- 2007 도의회 신년교례회
 - 일 시 : 2007. 1. 8(월) 11:00
 - 장 소 : 도청 강당
 - 참 석 : 도의원

- 양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 폐막식
 - 일 시 : 2007. 1. 9(화) 19:00
 - 장 소 : 캄보디아
 - 참 석 : 이상천 의장

○ 농업경영인 도연합회 신·구임원 이·취임식

- 일 시 : 2007. 1. 12(금) 15:00
- 장 소 : 도 농업인회관
- 참 석 : 방대선 부의장

○ 담수회 신년교례회

- 일 시 : 2007. 1. 16(화) 11:00
- 장 소 : 담수회관
- 참 석 : 안순덕 부의장

○ 2007 체육인 신년간담회

- 일 시 : 2007. 1. 16(화) 12:00
- 장 소 : 경주 교육문화회관
- 참 석 : 이상천 의장

○ JC경북지구 회장단 및 감사 이·취임식

- 일 시 : 2007. 1. 16(화) 19:00
- 장 소 : 포항 문예회관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의정연구회 세미나

- 일 시 : 2007. 1. 18 ~ 1. 19
- 장 소 : 포항 청룡회관
- 참 석 : 의장단, 손진영 회장의 의정연구회원 등

○ 행정자치부장관 의회 방문

- 일 시 : 2007. 1. 18(목) 13:4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이상천 의장

○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에 따른 지원금 및 서명서 전달

- 일 시 : 2007. 1. 19(금) 15:20
- 장 소 : 대구시청
- 참 석 : 방대선 부의장

○ 동해안권 지방의회협의회 창립회의

- 일 시 : 2007. 1. 19(금) 16:00
- 장 소 : 강릉 현대호텔
- 참 석 : 이상천 의장, 김응규 의회운영위원장, 이현준 기획
경제위원장,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도청이전 조례제정관련 프로그램 출연

- 일 시 : 2007. 1. 22(월) 17:00
- 장 소 : 대구 CBS
- 참 석 : 장대진 교육환경위원장

○ "2007 도정을 듣는다" 대담프로그램 출연

- 일 시 : 2007. 1. 24(수) 14:00
- 장 소 : 포항 MBC
- 참 석 : 이상천 의장

○ 노인회 경북연합회 신년교례회

- 일 시 : 2007. 1. 25(목) 11:30
- 장 소 : 그랜드호텔
- 참 석 : 안순덕 부의장

○ 산업평화대상 시상식

- 일 시 : 2007. 1. 25(목) 14:00
- 장 소 : 도청 강당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여성농업인 도연합회 임원 이·취임식 및 10주년 기념식
 - 일 시 : 2007. 1. 25(목) 14:00
 - 장 소 : 도 농업인회관
 - 참 석 : 방대선 부의장

- 경상북도, 영주시-소디프사 신소재 투자양해각서(MOU) 체결
 - 일 시 : 2007. 1. 26(금) 16:00
 - 장 소 : 대외통상교류관
 - 참 석 : 이상효 통상문화위원장, 김종천 의원

- 도쿄·가나카와 도민회 신년교례회
 - 일 시 : 2007. 1. 27(토) 17:30
 - 장 소 : 일본 도쿄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
 - 일 시 : 2007. 1. 29(월) 15:3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이상천 의장

VI. 5분 자유발언

2007년 1월 30일(화) 제212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한혜련 의원(통상문화위원회) ◎

영천출신 통상문화위원회 소속 한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경북도정의 핵심적 추진계획인 새경북발전 프로젝트의 추진이 최근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 핵심적 내용은 동해안 해양개발, 낙동강 프로젝트, 경북방문의 해, 일자리 1만 6,000개 창출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최근 2007년의 구상을 발표하면서 누구나 살고 싶은 부자 경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대내외에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북은 참여정부의 L자개발계획의 추진에 따라 상대적으로 동해안 지역은 지금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동해안개발, 낙동강 프로젝트, 대구·경북 경제통합, 살맛나는 농어촌 조성 등을 중심으로 추진할 과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경북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지사님의 계획과 의지에 적극 찬동하며, 그를 위한 모든 노력에 기여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를 들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빌미로 전남과 부산

등지에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독 경북지역은 국책사업의 대상에 빠지는 등 경북지역의 낙후에 따른 불균형이 심히 우려되고 있는 처지입니다.

우리는 혹여 정부의 L자개발계획에 비난의 목소리만 높이고 정작 U자형 개발을 위한 구체적으로 현실 가능성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노력과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되돌아보게 합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국책사업으로 목포, 신안, 무안 등지에 무려 22 조원을 투입하여 서남권 종합발전구상을 이미 밝힌 바 있으며, 서남지역에 혁신클러스터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까운 부산의 경우만 하여도 국책사업으로 부산 북항에 9조 6,000억원을 들여 세계적인 도심형 해상관광단지를 집중적으로 개발할 구상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다른 지역의 경우 지역발전을 위한 대단위 장기발전 전략을 세우고 지역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내고 있음에도 우리 경북의 대형프로젝트는 집중과 선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은 소리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경북의 경우는 U자형 개발의 당위성을 오랫동안 목소리만 높여왔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영일만신항은 신항 규모의 축소를 거듭하면서 경주 방폐장 유치에 대한 지원책은 빈껍데기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포항과 울산 간의 도로건설은 전면 유보되는 등 발전을 거듭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경북만 국토개발정책에

소외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경북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신성장동력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그 어떠한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1세기 환태평양시대에 걸맞는 국토개발은 L자형이 아닌 U자형이 되어야 한다고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천은 구미시에서 칠곡군과 대구를 거쳐 경산, 경주, 포항으로 이어지는 산업벨트의 중간에 있으면서도 변변한 산업단지조차 없는 형편입니다.

현재 영천IC 부근에 50여만평 규모의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될 계획이 있기도 합니다마는 그것으로 경북의 미래를 견인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적어도 300~400만평 이상의 산업단지가 필요합니다. 대규모 산업단지의 건설을 통해 제2의 신도시로 기업도시를 건설한다면 구미, 칠곡, 대구의 혁신도시, 그리고 포항과 경주로 이어지는 대단위 산업벨트라인을 통해 얼마든지 경북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에 와서는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기도 한만큼 경북발전을 위한 대단위 U자형 개발 클러스터 전략을 새로이 구상하고 그 하부계획에 따라 구미, 칠곡, 대구, 경산, 영천, 경주, 포항을 잇는 동남권 대규모 산업벨트의

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하여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을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수출 한국의 견인차 역할을 다 해내고 있는 경북 동남권의 중흥을 일구어 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젝트가 대구의 혁신도시, 울산의 대규모 산업시설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경북 동남권의 집중적인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성장잠재력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필수적인 제2의 산업경제와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인재와 돈이 모여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시 한번 선택과 집중에 의한 경북 동남권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여 U자 개발을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300만 도민이 잘 살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07년 2월 9일(금) 제212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김영기 의원(교육환경위원회) ◎

청송군 출신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김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제212회 임시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역동적인 도정추진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포항~경주~영덕~울진을 잇는 세계적인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구미~칠곡~경산~포항을 잇는 첨단 IT산업벨트 조성, 모바일 특구지정, 유망기업 도내유치,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 성공개최, 김천혁신도시 등 동부연안권과 남부도시권, 중서부권에 대한 다양한 개발정책과 성과가 언론에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러한 언론을 접할 때마다 도내에서 가장 낙후된 북부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안동, 영주, 상주, 청송, 영양, 봉화 등 북부권 11개 시·군의 면적은 도 전체의 56.7%를 차지하고 있으나 GRDP는 도 전체의 18.9%, 재정자립도는 13.3%에 불과함

니다. 1인당 평균소득도 904만원으로 경북 전체평균 1,407만원의 64%에 그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인구는 연평균 2만명씩 줄어 지난 10년새 15%나 감소하였으며 농촌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그치지 오래입니다.

북부지역은 각종 개발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농업 이외에 뚜렷한 산업기반이 전무한 실정으로 향후 획기적인 발전대책이 없을 경우 지역 공동화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북부지역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한방자원산업화단지, 한국해양연구원 동해기지, 바이오산업단지 등 생물건강, 한방, 해양바이오 산업인프라가 이미 구축 또는 구축 중에 있으며, 특히 전국 어느 지역도 가지지 못한 201종의 다양한 작물과 국내 생물종의 3분의 2가 서식하는 낙동강 습지, 소백산과 태백산의 내륙산림, 동해 해양자원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생물종을 보유하고 있어 생물산업의 발전 잠재력은 매우 높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생물공학의 시대로 생물산업은 IT산업을 잇는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생물산업의 세계시장규모는 2010년 150조원까지 증가하고 국내시장도 6조원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부지역은 지역이 가진 최대 강점인 풍부한 생물자원을 기반으로 기초연구시설과 관련기업을 유치하여 종자, 신물질, 식품 산업 등 새로운 형태의 고부가가치 생물산업을 육성해야 자본과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 이미 세계 생물 산업의 패권장악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국 12개 시·도가 바이오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응용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부지역은 풍부한 생물자원과 많은 대학·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전, 충북 등에 생명공학 관련시설과 기업 그리고 인재를 내어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북부지역이 국내 생물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는 지난 2004년 11월 세계 12개국에 참여한 제1회 세계 솔리시티총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환경과 관련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많은 국비지원과 더불어 태양에너지산업을 선점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생물산업의 선점을 위해서는 국내적 노력뿐만 아니라 관련 국제행사를 우리 도가 유치하는 것도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람사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유엔환경개발회의 등 지구적 규모의 환경 관련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연속 개최하여 환경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8년 람사협약 총회는 경남 창원에서 개최가 결정되었으며,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총회는 환경관련 NGO가 유치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북부지역을 우리나라 생물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제행사 유치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북의 국제 위상을 높이고 국내 생물산업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생각되며 이와 연계하여 북부지역 균형개발로 300만 경북도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이시하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경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시하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에는 현재 대형소매점이 포항에 7개 업체, 구미에 6개 업체 등 모두 20여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인구 11만에 지나지 않는 영주에 홈플러스와 파머스마켓, 동원마트 등 3개 대형소매점이 들어설 예정으로 이에 지역상인들은 그야말로 절박한 생존권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주에서도 허브아울렛, E-마트 외에 또 다른 대형 소매점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형소매점의 무분별한 입지는 지역 중소상인의 생존권에 대한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중소형 상가는 지역주민의 생계유지의 방편이자 고용의 일정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게 하나에 4~5명의 가족들의 생활이 달려있는 생계형, 자립형 독립사업자가 대부분입니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가족 전체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인천, 대전, 전주 등 전국 각지에서는 대형소매점 입점 반대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함께 입점불허캠페인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한시적으로 대형소매점 허가를 보류하고 있고, 제주도에

서는 입점 억제를 위해 신규업체에 대한 도시계획분야 규제와 교통 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전주에서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소매점 신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 리모델링을 한다, 상품권 발매를 한다. 이런 야단법석을 떨어봐야 별반 소용이 없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대형소매점의 무분별한 입지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을 넘어서 지역상권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실제 통계청 조사결과 우리 경북은 도내 3,000평 이상 대형소매점의 경상수지는 2000년을 기준으로 100이라고 볼 때 2006년 11월 현재 382.0으로 전라남도의 457.8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만큼 지역 내 소비가 대형점포 한 곳으로 모이는 쏠림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문경시에는 인구 16만에서 7만명으로 반 이상이 줄었고 하이마트 등 대형전자 대리점이 5개 점포 외에 소형 소매점 500여개 점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점포 중에서 대형 전자대리점 1개를 포함해서 55%에 해당하는 300여개의 점포가 문을 닫고 폐업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문경시 모전동에 (주)부성유통이 건평 8,000여평의 지하 2층, 지상 5층의 대형매장을 신설 하여 홈플러스 1개소와 같은 동에 (주)랜드개발이 건평 9,000여평의

지하 2층, 지상 5층의 문경아울렛 신축허가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대형마트가 인구 10만도 안되는 소도시에 더욱이 기존에 있는 대리점들도 폐업상태에 있는데 대형소매점이 추가적으로 2개소나 들어선다면 500여개의 영세상인들은 몰락을 하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지사님, 조병인 교육감님! 저는 경상북도의회 의원이기 이전에 문경시 시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6만의 인구가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고작 7만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고향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농촌마을에 이 무슨 가진 자의 횡포입니까?

이제 이런 영세상인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시장경제의 원칙이라는 미명 아래 이 나라는 있는 자만이 살아남아야 한답니까? 정부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10억, 20억 하는데 농촌에 집값은 거기에 따라 올라가지는 못할망정 반값으로 떨어지고 공시지가는 매년 올라서 각종 세금은 오히려 2배, 3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국가라 하지만 이런 생계형 영세민에게 치명적인 가진 자의 폭탄을 어떻게 막아야 합니까?

법이 잘못되었으면 법을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기필코 막아야 합니다. 못사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못살게 하는 이 세상, 심화되는 이런 양극화 현상을 누가 고쳐나가야 합니까?

정말 좀 먹고 살게 해 주십시오. 살인적인 부의 폭탄을 막아주십

시오. 가진 자의 횡포를 막아 주십시오. 영세상인들의 일자리를 그대로 지켜주십시오.

지금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지역의 영세상인들은 앞으로 불매운동은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을 대대적으로 벌어나갈 것입니다. 성원해주십시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 록



- 조 례 안 : 5건
- 결 의 안 : 1건

■ 조 례 안 : 5 건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2월 9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9조제1항 중 “본직기관의 장”을 “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 중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을 “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당해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을 “도지사”로 한다.

제11조 중 “소속기관의 장”을 “도지사”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지방

자치단체의 장”을 “도지사”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도지사”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

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여자공무원은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7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1
출 산	배우자	3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입 양	본 인	14

비고 : 1.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p>	<p>제2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 ----- -----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p>
<p>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u>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u>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u>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u></p>	<p>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의 ----- -----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 ----- ----- <u>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u></p>
<p>제10조(파견근무)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u>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u></p>	<p>제10조(파견근무) ②다른 기관에서 ----- ----- ----- <u>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18조(연가일수) ① (생략)</p> <p>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제18조(연가일수) ① (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p>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p>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현 행	개 정 안
<p>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p> <p>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p> <p>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p> <p>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p> <p>7.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p> <p>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p> <p>제23조(특별휴가) ① (생 략) <u>②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u></p>	<p>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p> <p>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p> <p>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p> <p>6. 「혈액관리법」에 따른 현혈에 참가할 때</p> <p>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p> <p>8. 천재지변·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p> <p>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p> <p>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u>②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u> <u>③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u></p>

현행	개정안
<p>③여자공무원은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p> <p>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p> <p>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p>	<p>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p> <p>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p> <p>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p> <p>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p> <p>④여자공무원은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p> <p>⑤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p> <p>⑥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p>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2월 9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로 한다

“별표2중 7. 문화예술관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문화예술관계		
(1) 공연자 등록신청	1건	2,000
(2) 공연자 등록증 재교부신청	“	300
(3) 각본 등 심사신청	“	1,000
(4) 영사기사 면허시험 응시신청	“	2,000
(5) 영사기사 면허신청	“	1,000
(6) 영사기사면허증 재교부신청	“	2,000
(7) 사회단체 지부 등록신청	“	6,000

(8) 사회단체 지부 변경등록 신청	”	2,000
(9)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	”	500
(10) 출판사 등록	”	500
(11) <u>비디오물, 게임물, 음반·음악영상물</u> <u>제작업 또는 배부업 신고</u>	”	<u>20,000</u>
(12) <u>비디오물, 게임물, 음반·음악영상물</u> <u>제작업 또는 배부업 변경신고</u>	”	<u>10,000</u>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2월 9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경상북도중
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2조에 제12호 내지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함은 창업자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중소
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조합을
말한다.
1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함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14.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함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인수 등을 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15조에 의거
등록된 조합을 말한다.

제4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6조제1항제6호에 의한 출연금

제5조제1항에 제9호 내지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10. 신기술사업투자조합
11. 기업구조조정조합

제6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에의 투자참여를 위한 출연금

제6조제2항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출연금의 귀속) 제6조제1항제6호에 의한 출연금은 사업목적이 완료된 경우에는 기금에 귀속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2조(정의)(생략) 1. ~ 11.(생략) <신설>	제2조(정의)(현행과 같음) 1. ~ 11.(현행과 같음) 1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함은 창업자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조합을 말한다. <신설> 1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함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기 위하여 「여성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신설> 14.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함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인수 등을 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15조에 의거 등록된 조합을 말한다.	사업 대상 추가에 따른 정의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②(생략) ③(생략) 1. ~ 6.(생략) <신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1. ~ 6.(현행과 같음) 7. 제6조제1항제6호에 의한 출연금	사업 대상 추가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제5조(기금의 지원대상자)</p> <p>①(생략)</p> <p>1. ~ 8.(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5조(기금의 지원대상자)</p> <p>①(현행과 같음)</p> <p>1. ~ 8.(현행과 같음)</p> <p><u>9.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u></p> <p><u>10. 신기술사업투자조합</u></p> <p><u>11. 기업구조조정조합</u></p>	<p>대상 추가</p>
<p>제6조(기금지원사업)</p> <p>①(생략)</p> <p>1. ~ 5.(생략)</p> <p>〈신설〉</p>	<p>제6조(기금지원사업)</p> <p>①(현행과 같음)</p> <p>1. ~ 5.(현행과 같음)</p> <p><u>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및 기업구조조정조 합에의 투자참여를 위한 출연금</u></p>	<p>사업 대상 추가</p>
<p>② 기금의 관리자는 제1 항 제1호 내지 제5호 각 목에…</p> <p>〈신설〉</p>	<p>② 기금의 관리자는 <u>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각목에…</u></p> <p>제13조의2(출연금의 귀속) 제6조제 1항제6호에 의한 출연금은 사업 목적이 완료된 경우에는 기금에 귀속한다.</p>	<p>귀속 조항 신설</p>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2월 9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라 함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다른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3. “현지개량사업”이라 함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동주택건설사업”이라 함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건설사업으로써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환지방식사업”이라 함은 법 제6조제1항제3호,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써 정비계획에서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효용지수”라 함은 분양예정 건축물을 층별, 용도별로 파악하여 감정평가시에 고려하는 효용비율로써 이를 지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7. “주택접도율”이라 함은 정비구역내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8. “호수밀도”라 함은 정비구역 면적 1헥타아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써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 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보며 기준 층 이외의 가구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 나.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다. 기존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 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 불구하고 전환전의 건축물 동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 마. 준공업지역 안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④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도의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건축물로서의 구조 강도를 갖추지 못한 것
- 2. 거주자의 안전에 위협이 있을 정도로 노후한 것
- 3. 벽·지붕 등의 주요구조부의 재질이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적절한 재질이 아닌 것
- 4. 2층 이하의 벽체가 목조·조적조 또는 연와조 건축물 등 화재에 취약한 것

②영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 조례가 정하는 연수”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수를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경우

가. 1994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나. 1985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1년+(준공연도-1985)

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인 경우

가. 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30년

나. 그 외의 구조로 된 건축물은 20년

③영 제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기능상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침실·부엌·화장실 중 한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주택
2. 상하수도 시설이 없는 건축물
3. 고정 난방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작동이 불가능한 건축물
4.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건축물
5. 쾌적한 주거시설을 위하여 방음·환기·채광을 위한 적정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건축물

제2장 정비구역의 지정

제4조(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요건) 영 제10조제1항별표1의 제5호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전체수의 100분의 50이상인 지역

나. 무허가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전체의 수의 100분의 20이상인 지역

다. 호수밀도가 헥타아르당 70호 이상인 지역

라. 정비대상 구역내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길이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100분의 40이하인 지역

마.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수가 100분의 40이상인 지역

바. 상습침수지역·재해위험지역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사. 과소필지 등으로 현행 건축기준 등에 적합한 증·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제한됨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하게 된 지역

아. 대상구역내 국·공유지 비율이 높아 거주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

자.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

2. 주택재개발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요건을 말한다.

- 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전체수의 100분의 40이상인 지역
- 나. 정비대상 구역내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길이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100분의 40이하인 지역
- 다.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수가 100분의 40이상인 지역
- 라.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마. 상습침수지역 재해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제5조(정비계획 수립시 조사 내용) 영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의 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사용승인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내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제6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2조제12호에서 “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13조제1항제3호 규정의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 조정을 위한 구역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의 결정내용 중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이하 “건축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시행지구 분할계획 또는 건축부지계획의 변경
7. 건축계획중 법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고시한 범위안에서 임대주택공급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인 경우
8.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배치계획의 변경
9. 건설예정인 주택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변경과 이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10.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고시한 “주택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의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한한다.)

제8조(정비계획의 세부기준) ①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가. 행정구역·지형,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 건축물의 배치·규모 효율적인 사업시행규모 및 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변에 설치된 도시계획시설과의 연계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정비구역의 경계는 도시계획·행정구역·지형·도로·지적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되, 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직선의 형태로서 굴곡이 심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건축물이 저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계획할 것. 이 경우 정비 구역경계선으로 인하여 분할되는 구역 외의 토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 정비구역의 면적은 사업시행 후 주변 지역의 기능회복 및 기능전환을 고려한 적절한 규모로 하고 정비구역의 형태는 정비사업 시행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라. 정비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규정에 따른 녹지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나대지 등이 가급적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획할 수 있다.

- (1)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공원·녹지의 기능을 개선하거나 그 지상의 불량건축물을 철거·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지형여건, 건축물의 배치 또는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과 영 제13조제1항제4호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계획시설과 정비기반시설은 적절한 배치와 규모가 되도록 하고 정비구역 인근에 설치 또는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과 연계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당해 시설용지의 확보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른 진입도로는 확보되었거나 정비사업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지하시설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하여 지하공간 개발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3.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가용성을 참작하여 적정한 규모 및 배치가 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4.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는 정비사업시행 인가 신청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5. 영 제1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형여건,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분할된 지구 상호간의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정하되 지나치게 광대하거나 협소하게 분할하여 수립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주거환경정비구역의 분할시행에 관한 계획은 동일 정비구역안에서 현지개량사업 또는 환지방식사업이 공동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거나 정비구역 여건상 분할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6.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구역의 임대주택부지, 종교부지 및 분양 대상 복리시설 등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진입로를 정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9조(건축물에 관한 계획)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계획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영 제13조제1항제3호의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연도·용도·구조·규모·입지·허가 유무 및 노후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개수·철거 후 신축·철거 이주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나. 공동주택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분양 주택 외에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을 계획할 수 있다. 다만,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가 적거나 건축계획상 임대주택의 건설이 곤란한 경우 또는 다른 정비구역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구 또는 획지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가구 또는 획지별로 건축계획을 정한다.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가. 정비구역의 특성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복합용도의 건축계획을 원칙으로 한다.

나. 주거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주택 용도를 포함한 복합용도의 건축계획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다. 정비구역을 구분하여 높이 및 층수를 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이 호에서 “기본 계획”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의 최고 높이 및 층수가 정하여지지 않은 지역은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따른다.

마. 건축계획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건축선, 건축물 배치계획, 공개공지계획, 조경계획, 건축물의 주·부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보행동선계획, 건축물의 주차 진·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차량동선계획
- (2) 기본 계획의 내용 및 당해 용도지역·용도지구 적합한 건폐율·용적율·높이 및 층수, 건축물의 용도 계획
- (3) 대상구역 주변 건축물 현황(건축선·층수·높이)을 감안해 당해 구역의 스카이라인계획
- (4) 대상구역 주변에 문화재나 자연 지형지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경관계획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0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27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신고로써 변경할 수 있는 “도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자구의 정정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 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5. 매도청구 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11조(조합설립 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①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작성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정관을 기준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조합의 명칭은 사업시행구역 명칭의 뒤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
3. 신청인 대표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추천 또는 주민총회에서 선정할 것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시·군 안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5.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내용으로 할 것
 6.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를 기준으로 작성할 것
 7.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건설교통부 고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동의서식으로 하고, 조합원 번호, 동의자의 주소·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작성 제출할 것
 8. 위원선정 증빙서류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추천서 또는 주민총회 회의록 등을 첨부할 것
- ②제1항의 규정(제2호를 제외한다)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시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38조제12호의 규정에 따른 “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영 제41조제1항의 시행규정에서 정한 사항 중 제10조제1호·제2호와 제4호의 변경
2.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중 다음 각목의 사항
 - 가.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 나. 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른 영 제41조제2항제8호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3. 영 제41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규약에 정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업시행자 외에 토지등의 소유자가 없거나 총회의 의결로 규약을 변경하도록 정한 경우 제10조제1호·제2호와 제4호의 사항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서 당해 인·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한 것

제13조(도시환경정비사업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시장·군수는 지정개발자에게 예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지체없이 당해 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시·군의 금고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주택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당해 정비사업의 진도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을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영 제41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당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15조(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건축법 등의 특례) ①법 제42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거용도와 주거용도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주거용도가 20세대 이상이고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②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제51조와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 이상
 - 나.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 다.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1/3이상
3.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할 것
4.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측면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6미터 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

5.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정비구역 전체에 동일한 방향으로 적용하는 정비구역으로서 건축 가능한 높이가 고시된 정비구역은 정북방향을 정남방향으로 볼 수 있다.

제16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영 제4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②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기하고, 그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정관 등에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자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안에서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중 희망하는 대상·규모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의 산정) 법 제48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공동주택(지분대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산액을 산정한다.

1.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는 공동주택은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을 적용한다.
2. 제1호 이외의 공동주택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원가(대지비 및 건축비와 사업시행에 소요된 제비용 등) 산출근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기준 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공급 대상자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자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영 제 57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종전가액”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가액을 제외한 가액(이하 “권리가액”이라 한다)이 당해 사업시행구역의 분양 예정 토지 및 건축물 중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세대의 추산액(제17조 규정에 의한 지분대지 가격을 포함한 공동주택 가격을 말한다) 이상인 자. 이 경우 점유연고권이 인정되어 당해 점유자에게 불하되었거나 불하예정인 국·공유지 면적에 해당하는 가격은 권리가액에 포함한다.

가. 「건축법」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필지이거나 그 대지 범위 안에 여러개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이하 “구역지

정 공람공고일”이라 한다)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여러 필지 중 1필지 이상을 필지단위로 취득하였거나 필지의 일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하였거나, 그 건축물의 일부를 취득(수동의 건축물 중 1동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1동의 건축물 일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한 경우 그 해당 가액

나.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후에 그 건축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취득하거나, 그 건축물 또는 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경우 그 해당가액

다. 「지적법」 제2조제4호 규정에 따른 1필지의 토지를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후에 분할취득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그 해당가액

라.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경우 그 해당가액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한다) 중 제1호 가목 내지 다목 규정의 경우로 취득한 토지면적을 제외한 잔여소유 토지면적이 시·군 「건축조례」 규정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 토지(다만, 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후부터 법 제52조제3항 규정에 따른 공사완료공고일 기

간동안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분양 받을 권리를 양도받은 자의 경우에는 권리양수일(제4항 규정의 부동산등기부상 접수일자)부터 공사완료공고일 기간 동안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다만, 그 주택이 제1호 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여럿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2. 제1항제3호 규정에 따른 하나의 주택을 여럿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제1항 각 호 규정에 따른 분양대상기준에 합당하게 여러 토지 등의 소유자가 함께 분양신청한 경우

4. 제1항제1호각목(제1항제2호와 제3호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로서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의 권리유형 및 규모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그 권리가 제2항 각 호의 분양대상에 합당하여 당해 토지 등의 소유자 여럿이 함께 분양신청한 경우

③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 중 취득의 범위는 정비구역지정 공람 공고일 이전에 이미 일부 취득된 소유권을 규모나 유형의 변동 없이 단순 이전되는 경우를 제외하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일은 부동산 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19조(현금청산대상) ①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3호 및 영 제52조제1항제3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이 당해 사업시행구역의 분양예정 토지 및 건축물중 분양예정 최소 규모 공동주택 1세대의 추산액(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대지가격을 포함한 공동주택 가격을 말한다)이하인 경우. 이 경우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은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규칙에서 정하는 경우 이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하나의 대지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이거나 그 대지안에 수개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로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이하 “구역지정공람공고일”이라 한다)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여러 필지 중 1필지 이상을 필지 단위로 취득하였거나 필지의 일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하였거나, 그 건축물의 일부를 취득(여러 동의 건축물중 1동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1동의 건축물 일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한 경우

3.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후에 그 건축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취득하거나, 그 건축물 또는 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경우
4. 지적법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1필지의 토지를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후에 분할취득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5.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의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하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다만, 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분양 받을 권리를 양도받은 자의 경우에는 권리양수일(제4항 규정의 부동산 등기부상 접수일자)부터 공사완료공고일 기간 동안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전에 주택(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다만,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다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2. 하나의 토지 또는 주택을 다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④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규정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시점은 부동산 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20조(주택재개발사업 분양주택 공급 순위) 영 제5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은 분양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1.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2개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 내용에 의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공급기준을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총건설가구수의 100분의 50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100분의 50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규모 주택분양 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며, 주택의 동·층·호 등의 위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의한다.

제21조(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의 방법과 기준) 영 제52조제2항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도 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 또는 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한다. 이 경우 새로이 건축되는 주택의 규모별 배정은 조합원 소유 기존주택 등의 동별·위치·층수 등을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2. 임대사업자에게 소유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비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당해 정비구역안에 소유한 임대주택에 한한다. 다만, 정비구역밖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 공급하는 주택은 사업시행구역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 중 기존에 소유한 임대주택의 규모에 가장 근접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4.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에 관하여는 영 제5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5.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 등으로 정한다.

제22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54조제1항 관련 별표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군수가 당해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 49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제23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보증금·임대료) 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1호가목(2)의 규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령」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제24조(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3 제2호가목(4)의 규정에 따른 “도 조례가 정하는 자”라 함은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②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3 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도 조례가 정하는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선정방법, 공급 절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고시기준에 따른다.
2.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세대기준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 가. 기준일로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혼모가 직계존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 나. 시장·군수가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 다.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이어

야 한다.

라. 기준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동일 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 분리세대는 제외한다.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25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된 토지(이하“양여토지”라 한다)를 현지 개량사업용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연고권자”라 한다)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여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 매각 규모는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써 330제곱미터로 이하로 한다

③당해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규모의 제한에 불구하고 이를 당해 건축물의 토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심한 경사지역 등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정비계획에 의하여 도로가 대지로 용도 변경되는 토지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처분 후 남는 토지로서 20제곱미터에 미달하여 연고권자에게 초과 매각이 적당하다고 관할 시장·군수가 인정하여 정비계획에 반영된 토지. 이 경우 추가매각 토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④양여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당해 토지의 매각계약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⑤법 제6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공유지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및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감독 등

제26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①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인가·승인과 고시한 때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과 고시
2.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과 고시
3.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신고수리) 인가

4.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시행(변경, 중지, 폐지 또는 신고 수리) 인가와 고시
 5. 법 제48조와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신고 수리) 인가와 고시
 6. 법 제48조제3항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규정에 따른 일반 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승인
 7.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포함)와 공사완료 공고
- ②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분기의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75조2항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의 명령 또는 업무 조사의 내용
 2. 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보고된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
 3. 법 제77조제1항과 제2항 규정에 따른 감독처분 현황

제6장 보 칙

제27조 (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조합 또는 지정개발자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소유권이전 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과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와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와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와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12. 조합설립인가서(변경인가서를 포함한다)

제28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시장은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법 제8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그 밖의 도 조례가 정하

는 재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2. 정비사업 관련 용자금 회수금과 이자 수입
3.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4.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④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1. 법 제63조와 영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와 용자
2. 법 제60조제2항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와 용자(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국고용자금에 대한 상환금
5. 그 밖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⑤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 연도마다 수립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⑥시장은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9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 ③(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도시재개발사업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2월 9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2년으로 하되 연임” 을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10조(구성) ① 내지 ④ (생략)</p> <p>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u>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10조(구성) ① 내지 ④ (현행과 같음)</p> <p>⑤ ----- <u>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u>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u>제2조(경과조치)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u></p>	<p>장기위촉 위원 연임 제한 (운영상 미비점 보완)</p>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2월 9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경상북도 도청을 경상북도 관내로 이전하는 절차와 신도청소재도시를 건설하는 방법 및 건설재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지”라 함은 도청이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제시하는 신청요강에 따라 시·군으로부터 신청받은 지역을 말한다.
2. “평가대상지”라 함은 제1호의 후보지 중 경상북도의 도청 및 유관기관 등(이하 “경북도청 등”이라 한다)이 이전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예정지”라 함은 제2호의 평가대상지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평가기준과 방법에 따라 경북도청 등의 이전지역으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

4. “신도청소재도시”라 함은 제3호의 예정지에 건설되는 도시를 말한다.

제2장 이전계획 수립 등

제3조(경북도청 등의 이전계획)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는 경북도청 등을 신도청소재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이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대상 기관
2. 이전방법 및 시기
3.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4. 신도청소재도시 규모와 개발방향
5. 재원 조달방안
6.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부동산 투기 방지) 평가대상지 선정 전후에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가 투기 방지대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련 법규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난개발 방지) 예정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대책수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지사·당해지역 시장·군수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과열유치 행위의 제재) ①시·군 등에서의 도청유치 활동은 추진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유형과 감점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추진위원회에서 과열유치 행위로 결정할 경우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에는 당해 지역 시장·군수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전문기관의 용역 등) ①추진위원회에서는 각 시·군에서 신청한 후보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필요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청이전 예정지의 원활한 결정을 위하여 용역결과의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여론의 수렴) 추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추진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자문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추진기구

제10조(추진위원회의 설치) 경북도청 등의 이전과 신도청소재도시 개발과 관련한 중요 정책추진 및 심의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추진위원회를 둔다.

제11조(기능) ①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경북도청 등의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자문위원회, 평가단 및 추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청이전 후보지·평가대상지·예정지 선정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사항
5. 건설재원에 관한 사항
6. 과열유치행위의 감점결정 및 제재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도지사가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요구한 사항

제12조(위원장 등의 선임) ①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선임하며, 부위원장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기획조정본부장, 행정지원 국장으로 하고, 도의회 의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3인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경상북도에 본적 및 주소를 두지 않는 자로 하며, 도청이전 및 신도청소재도시의 개발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도지사가 6인, 도의장이 5인을 추천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 임기는 당해 직책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을 누설한 때
3. 위원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때
4. 기타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제12조 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즉시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 등) ①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간사) ①위원장의 명을 받아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지원단의 단장으로 한다.

제18조(자문위원회) ①추진위원회는 도청이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30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가 정한다.

제19조(추진지원단) ①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추진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지원단장 및 단원은 도지사가 경상북도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다만 예정지가 선정 될 때까지는 새경북기획단장이 지원단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지원단장은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장 평가단

제20조(평가단의 구성) ①추진위원회는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둔다.

②평가단은 시장·군수와 지역 도의원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각 1명씩 23명,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에 본적 및 주소를 두지 않은 전문가 60인을 포함한 83인으로 구성한다.

③평가단은 평가대상지가 선정된 이후에 구성하며, 단장은 평가단에서 호선한다.

제21조(평가수행) ①평가단은 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된 평가기준 및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대상지에 대하여 공정한 평가를 수행한다.

②평가단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위원장은 평가수행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평가결과 보고 및 발표) ①평가단장은 평가대상지에 대한 평가결과를 즉시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를 즉시 도민에게 발표하고, 도지사 및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①도지사는 평가단의 평가결과 최고 득점 지역을 예정지로 지정·공고하여야 한다.

②도의회는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지역을 도청 사무소 소재지로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제5장 비밀누설 금지

제24조(업무상 비밀누설의 금지) 추진위원회·자문위원회의 위원과 평가단, 지원단의 단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또는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5조(비밀누설자에 대한 조치) 위원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일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속 기관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민간인일 경우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 해촉토록 하고, 비밀누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형사고발 등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신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등

제26조(특별회계의 설치) 신도청소재도시 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7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도청소재도시로 이전하는 경북도청 등의 청사, 부대시설 및 그 부지(청사의 건설을 위하여 확보한 부지가 있는 때에는 그 부지를 포함한다)의 매각대금, 사용료, 임차보증금, 회수금 및 당해 재산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전입금 및 예수금
4. 차입금
5. 기부금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도청소재도시에 입지할 경상북도의 청사 등 공공시설의 부지매입, 건축 및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출자 및 용자

제28조(지방채) 신도청소재도시 건설재원 충당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29조(잉여금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30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상북도 일반회계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 칙

제31조(수당 등) 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 평가단, 지원단 등에 소속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과 여비 및 심의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심의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32조(예산확보 및 지원) 도지사는 도청이전 업무 추진에 따른 용역비, 수당, 임차비 등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추진위원회 사무실, 보조인력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3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 평가단 및 지원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북도청이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1]

과열유치행위 유형별 감점기준

과열 유치행위 유형		감점기준	비 고
언론·통신 등을 통한 과열유치행위	방송	-유치를 위한 광고방송(3) -방송출연 유치발언 등(2)	1건당 감점
	신문(일간지 및 주간지, 시·군보 포함)	-유치를 위한 광고방송(3점) -유치행위가 명백한 기고 등(2점)	1건당 감점
	잡지	-유치를 위한 광고(3점) -유치행위가 명백한 기고 등(2점)	1건당 감점
	전단지	-전단지 제작·배포행위(3점)	1건당 감점
	서류 및 사무용품	-회의서류 등 여백활용 및 사무용품 홍보(1점)	1건당 감점
	인터넷 광고	-포털 사이트 배너광고(3점) -시·군 홈페이지 활용 유치홍보(3점)	1건당 감점 (1일 1건 간주 매일 감점)
기구·시설물 이용 과열유치행위	현수막	-현수막 1개당(1점)	1건당 감점
	입간판	-입간판 1개당(1점)	1건당 감점
	에드벌론	-에드벌론 1개당(3점)	1건당 감점
	차량광고	-정지된 차량광고(2점) -차량을 이용한 이동광고(3점) -스티커 부착(1점)	1건당 감점
행사 등을 통한 과열유치 행위	집회행위	-유치를 목적으로 세결집을 위한 다중집회 개최·지원시(3점)	1건당 감점
	토론회 등	-유치를 위한 토론회·세미나·워크숍 개최시(3점) -토론회 등에 참여 지역으로의 유치발언 등(2점)	1건당 감점

과열 유치행위 유형	감점기준	비 고
기타 과열유치행위	-추진위원회 위원, 자문위원, 평가단에 대한 개별접촉을 통한 유치행위(5점) -유형화가 어렵지만 과열유치 행위임이 명백한 행위는 추 후 추진위 심의를 통해 최고 3점 감점	

[별표2]

심의수당 지급 기준표(제31조 관련)

구 분	지 급 기 준
심의수당	회의1시간 내는 100,000원, 매1시간 초과 시마다 30,000원을 지급하되, 1회 3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결의안 : 1건

- 예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68
----------	----

제안연월일 : 2007. 2. 9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회

1. 주 문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교육청의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제안이유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과 활동기간 내 제출되는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3. 내 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전체 1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 선임은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200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명단

(구성일 ~ 2007. 6. 30까지)

구 분	추 천 자	비 고
계	15명	
의장추천	윤창욱(구미, 한나라당) 김종천(영주, 한나라당) 백영학(김천, 한나라당)	행정보건복지 통상문화 통상문화
기획경제	손덕임(비례, 열린우리당) 이상태(울릉, 한나라당)	
행정보건복지	김숙향(비례, 민주노동당) 윤영식(예천, 한나라당)	간 사
교육환경	송필각(칠곡, 한나라당) 전찬걸(울진, 무소속)	위원장
농수산	김동인(청도, 한나라당) 남종식(청송, 한나라당)	
통상문화	이재철(상주, 한나라당) 장경식(포항, 한나라당)	
건설소방	김기홍(영덕, 한나라당) 장길화(비례, 한나라당)	

의정활동보고서

(제212회 임시회)

2007년 3월 인쇄
2007년 3월 발행

발 행 / 경상북도의회
편 집 / 의시담당관실

☎ 602-5139 FAX 602-5140

〈비 매 품〉